

개정 건축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08호,
2000년 5월 10일 공포

개정이유

건축사법의 면허제(免許制)가 자격제(資格制)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제(登錄制)가 신고제(申告制)로 전환되고, 건축사협회(建築士協會)의 설립이 자율화되는 등 건축사법(建築士法)이 개정(2000. 1.28, 법률 제6244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건축설계시장의 개방과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자격시험(建築士資格試驗)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는 때에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예정자(合格豫定者)에 한하여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6조의3 및 제7조의2)
- 나.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법규(建築法規)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建築士豫備試驗科目)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配置計劃)을 신설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건축사의 설계능력향상을 도모함(영 제8조)
- 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시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함(영 제13조)
- 라. 건축사업무신고(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 건축사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영 제29조제2 및 별표 1)
- 마. 건축사협회의 설립이 자율화됨에 따라 건축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영 제35조제2항)

건축사법시행령 전문

(굵은 글씨가 개정된 부분임)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 12. 30]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전문 개정 95. 9. 2)

제3조 삭제 [95. 12. 30]

제4조 삭제 [00. 5. 10]

제5조 (건축사자격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제6조 (사망신고)

① 삭제[00. 5. 10]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23, 00. 5. 10])

제6조의2 (자격취소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정 00. 5. 10)

제7조 (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배치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을 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 9. 2)[개정 00. 5. 10])

제7조의2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본조신설 95. 9. 2)[개정 00. 5. 10])

제8조 (시험과목등)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 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 9. 2, 00. 5. 10)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 가. 배치계획
 -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 가. 건축구조
 - 나. 건축시공
 - 다. 건축계획
 - 라. 건축법규
- ② 삭제 (89. 7. 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2. 7. 14, 89. 7. 5, 94. 12. 23) (전문개정 79. 11. 5)

제9조 (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10조 (합격기준)

-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배치 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11조 (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제12조 (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제13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제14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9. 7. 1)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95. 9. 2)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④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0. 5.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정 00. 5. 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정 00. 5. 10)

제15조 삭제 (00. 5. 1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0. 5. 10)

제1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 12. 23)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85. 6. 15)

제2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00. 5. 10)

제21조 삭제 (00. 5. 10)

제21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 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9. 2) (개정 00. 5. 10)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 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사본
2. 삭제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23조 (신고기준)

- ① 삭제 (95. 9. 2)
- ② 삭제 (85. 6. 15)
-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 이어야 한다. (개정 80. 5. 26, 00. 5. 10)
- ④ 삭제 (82. 7. 14)
- ⑤ 삭제 (80. 5. 26)

제24조 (신고필증의 교부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 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 ② 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 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23, 개정 00. 5. 10)

제25조 삭제 (00. 5. 10)

제26조 삭제 (95. 9. 2)

제27조 삭제 (00. 5. 10)

제28조 삭제 (00. 5. 10)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 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00. 5. 10)

제29조의3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5. 9. 2) (개정 00. 5. 10)

제30조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 6. 15, 94. 12. 23, 95. 9. 2) (전문개정 81. 7. 14)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5. 9. 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95. 9. 2]

제33조 삭제 [00. 5. 10]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5. 9. 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 12. 23)

(본조신설 85. 6. 15)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12. 31)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개정 00. 5. 10)
-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신설 00. 5. 10]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개정 00. 5. 10)
-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 · 폐업신고의 접수 (신설 00. 5. 10)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 업무정지 명령 및 시정명령(개정 00. 5. 10)
- 3의2. 법 제29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신설 00. 5. 10)
-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개정 00. 5. 10)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제외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00. 5. 10)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의 관리
3.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

고의 접수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95. 9. 2)

제36조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23, 95. 9. 2) (본조신설 85. 6. 15)

부칙 [00. 5. 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신고효력상실에 해당하는 때 또는 업무신고효력상실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신고효력상실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1.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업무신고효력상실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2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28조 제1항제3호	업무신고효력상실	업무정지 12월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업무신고효력상실	업무정지 12월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5호	업무신고효력상실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8월	
나.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증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라. 기타		시정명령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9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6월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업무정지 4월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0호		
가.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나.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행한 때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라.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손괴를 야기한 때 마.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때 (3)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바.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사.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 아.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신고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신고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2)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자.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10.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2호	업무정지 2월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법 제28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	

[별표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 삭제 [95·9·2]

[별표 3]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개정 95·9·2, 00·5·10]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2호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4. 삭제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2항	3만원 이하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